문서번호	생활보장과-21304
결재일자	2015.7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활주거담당	★생활보장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
서영주	박종학	심진숙	07/06 도일환
협 조 자	기획예산과장 예산담당	권용대 김종호	

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예산의 사용변경(전용) 계획

2015. 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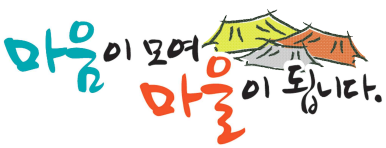

교 육 문 화 복 지 국
생 활 보 장 과

개편 주거급여 실시에 따른 예산의 변경사용(전용) 계획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개정에 따라 자가가구에 지급하는 수선유지 급여를 전담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)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변경되었기에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

Ⅰ 관련근거

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(예산의 변경 및 전용)

☐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-2043(2015.06.22)

Ⅱ 예산전용(변경) 사유

☐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가 전담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)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과목을 전용(변경) 하고자 함

☐ 전용요구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실시 결과 '15년 수선계획 대상가구에 대한 예상액【LH주거복지사업부-4685 (2015.06.19.)】

Ⅲ 예산전용(변경) 내역

☐ **전용(변경)금액** : 55,950천원

☐ **전용(변경)내역** (단위: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금액		전용(변경)후 예산
정책 사업	단위 사업	세부 사업	편성목	통계 목		감액	증액	
국민 기초 생활 보장	기초 생활 보장 지원	주거 급여	일반 보상금 (301)	사회 보장 적수 혜금	15,720,625 국 9,450,375 시 4,410,175 구 1,860,075	△55,950 국 33,570 시 15,666 구 6,714		15,664,675 국 9,416,805 시 4,394,509 구 1,853,361
국민 기초 생활 보장	기초 생활 보장 지원	주거 급여	자치 단체 등 자본이전 (403)	공기 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	-		55,950 국 33,570 시 15,666 구 6,714	55,950 국 33,570 시 15,666 구 6,714

Ⅳ 향후계획

☐ **수선유지급여를 전담기관(한국토지주택공사)에 의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**

붙임 : 일상감사통보서 1부 끝.